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위반 사례

1 개요

1.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

□ **대상** :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사립대학(전문, 원격 포함) 법인

□ **근거** : 사립학교법 제28조

□ **범위** :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허가(신고 수리)를 받아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교육용·수익용 재산

□ **처분 및 기채 절차**

○ 기본재산 처분 절차

이사회 결의	⇨	처분신청	⇨	관할청 허가 (신고 수리)	⇨	처분행위 (소유권 이전)	⇨	결과보고
학교법인		학교법인		교육부		학교법인		학교법인

○ 기채 절차

이사회 결의	⇨	기채신청	⇨	관할청 허가 (신고 수리)	⇨	약정(계약) 및 차입	⇨	결과보고
학교법인		학교법인		교육부		학교법인		학교법인

<참고>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대상

구분	내용
허가	-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·권리포기 등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
신고 수리	-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·권리포기 등 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-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처분(수용) - 전세권 설정의 경우

※ 허가(신고 수리)가 필요 없는 경우 :

- 기본재산의 취득
- 보통재산의 처분
- 수익용 예금 만기에 따른 만기연장 또는 예치금액 감소 없이 다른 종류 예금 변경
- 유가증권의 재투자(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)

2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결과보고

1. 결과보고 기한

□ **처분기한(통상 1년) 내 처분 완료한 경우** : 허가문서에 따라 처분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

※ 처분대금 집행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경우, 중간보고를 제출하고 집행 완료 후 30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 제출

□ **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** : 허가문서에 따라 처분기한 종료 후 처분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계획 작성하여 결과보고 제출

2. 제출 자료

□ **기본재산 처분**

○ 기본재산 처분 결과보고서 ※ <붙임1> 참조

○ 처분 또는 취득한 재산의 매매계약서 사본

※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협약서 사본

○ 처분대금의 수입・지출결의서, 은행전표, 통장사본

○ 처분 또는 취득재산의 등기부등본

○ (해당하는 경우) 세금납부서 사본, 은행전표, 통장사본

□ **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**

○ 기본재산 용도변경 혹은 교환 결과보고서 ※ <붙임1> 참조

○ 재산목록등록대장(공부)

○ 수입・지출결의서, 은행전표, 통장사본

○ 교환 전・후 재산의 등기부등본

□ **기본재산 담보제공, 의무부담**

○ 기본재산 담보제공, 의무부담 ※ <붙임 참조>

○ 해당계약서(담보설정 계약서, 융자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서)

○ 등기부등본(예금 질권인 경우에는 통장사본)

○ 수입・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

□ 기본재산 권리포기

○ 기본재산 권리포기 결과보고서 ※ <붙임 참조>

○ 권리포기계약서(또는 포기각서)

○ 등기부등본

3. 결과보고 방법

□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결과보고(공문)

○ 교육부 관할 부서에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결과 보고

※ 사립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, 사립전문대학 및 사립원격대학은 관할청에 결과보고 시행

□ 기본재산 및 기채 허가 결과 입력(대학재정정보시스템)

※ 사립대학, 사립전문대학, 사립원격대학 모두 결과보고 이후 시스템상 재산 변경 이력 입력 필수

※ 대학재정회계센터-공지사항(https://support.kasfo.or.kr)에 업로드 된 입력방법 동영상 참고

○ 기본재산 처분: 대학재정정보시스템(https://unifine.kasfo.or.kr/)→처분 및 기채 →처분관리(입력)→처분신청 및 결과보고제출에서 재산변경 이력 관리



시스템 처분신청
(면적(수량) 감소신청)

⇨



시스템 기본재산 처분
결과보고 제출

○ 기채 허가 : 대학재정정보시스템(https://unifine.kasfo.or.kr/)→처분 및 기채→기채관리(입력)→기채결과보고 제출에서 재산변경 이력 관리



시스템 기채 결과보고 제출

4. 유의사항

□ 기본재산 처분

○ 기본재산 처분 시, 반드시 이사회 심의·의결과 교육부 허가·신고 수리를 득한 후 처분하여야 함

○ 교육부 허가·신고 수리 공문의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자산 가치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하여야 함

○ 처분금액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
○ 재산 미처분 또는 일부 처분 경우도 허가기간 만료 시 **결과보고 必**

□ 기채

○ 차입주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어야 하며 학교장 명의 차입은 불가함

○ 차입금액 상환재원은 교비회계*, 법인회계, 부속병원회계에서 가능함

*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경우, 학교 교육목적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

○ 차입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운영비 충당 등 소모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할 수 없음

○ 기채처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한함

3 처분 및 기채관련 위반사례

1. 기본재산 처분 주요 부적정 사례

【사례 1】 허가 전 소유권(등기) 이전

① ○○학교법인은 교육부로부터 2019년 3월에 기본재산(토지)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으나, 허가일 이전인 2018년 11월에 소유권(등기)을 이전함

② ○○학교법인은 교육부로부터 2018년 3월에 수익용 예금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으나, 허가일 이전인 2018년 2월에 예금을 해지하고 사용함

③ ○○학교법인은 유가증권에 대해 2017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으나, 교육부 허가 전인 2017년 1월에 유가증권을 처분함

☞ 학교법인은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,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

【사례 2】 허가 전 공유물 분할

○○학교법인은 교육부로부터 2017년 4월에 토지 1필지 분할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, 허가일 이전인 2017년 2월에 공유물을 분할함

☞ 공유물 분할은 교환 또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대법원 등기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, 허가 이전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3】 가계약서를 통한 매매 시행

○○학교법인은 토지와 건물 처분 시, 계약 절차상 가계약서를 통해 매매를 시행함에 따라 정식 계약서가 미존재함

☞ 학교법인은 재산을 처분하고, 처분한 재산내역이 기재된 증빙자료와 함께 처분결과보고를 해야 함에 따라, 처분한 재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완해야 함

【사례 4】 처분대금 부당 사용

① ○○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처분 시, 처분대금을 수익용 정기예금 대체취득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, 실제로는 수익용 정기예금이 아닌 채권 대체취득으로 사용함

② ○○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처분 시, 처분대금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대체취득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, 실제로는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사용함

☞ 학교법인은 처분대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,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(단, 처분·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*은 처분대금에서 사용 가능함)

* 감정평가비, 제세공과금, 매각위탁수수료, 부동산중개수수료, 법무사비용

【사례 5】 잔금수령 전 소유권(등기) 이전

① ○○학교법인은 2018년 12월에 잔금을 입금받았으나, 처분대금을 완수하기 전인 2018년 11월에 소유권(등기)을 이전함

② ○○학교법인은 토지처분에 따른 매매잔금을 받기(2017년 9월) 전에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(2017년 7월)함

☞ 학교법인은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 46조에 따라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, 잔금이 입금되기 전에 소유권(등기)을 이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6】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본재산 수용 시, 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(등기) 이전

○○학교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재산 수용 시 소유권(등기) 이전 후 보상금을 완수함

☞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0조에 의거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(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.)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, 학교법인은 보상금 완수와 소유권(등기)이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7】 허가기간 이후 소유권(등기) 이전

○○학교법인은 2018년 5월에 토지 1필지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았으나, 허가기간(1년) 이후인 2019년 6월에 소유권(등기)을 이전함

☞ 학교법인은 허가기간 이내에 처분금을 완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에 따라, 허가기간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<참고> 허가기간 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행정절차

※ 허가기간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, 미처분 혹은 일부처분 결과보고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하며, 관할청에 연장허가 혹은 재허가를 득한 후 다시 재산처분을 진행해야 함

- 미처분 결과보고 :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 재산 전부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
- 일부처분 결과보고 :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 재산 일부만 처분한 경우
- 연장허가 :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기한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관할청에 허가를 득함
- 재허가 : 매수 의향자가 있으나,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혹은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까지 매수 의향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청에 결과보고 시행 후 허가를 득함

2. 기채 실행 주요 부적정 사례

【사례 1】 허가 전 여신거래약정서 체결

○○학교법인은 기존 기채기간만료가 도래하여 허가차입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, 교육부로부터 연장 허가를 득하기 전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함

☞ 학교법인은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, 허가 이전에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2】 허가 금리 초과 차입 시행

○○학교법인은 교육부로부터 연 3.10% 변동금리를 허가받았으나, 실제로 3.42%의 이율로 차입을 시행하였으며, 이는 허가이율을 초과함

☞ 학교법인은 허가금리 내에서 차입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, 허가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3】 차입금 부당 사용

○○학교법인의 집행 허가용도는 수익용 기본재산 냉난방 시설 및 인테리어 등 보수공사비 사용이나, 실제로는 대출이자 및 대출부대비용으로 사용함

☞ 학교법인은 차입금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, 차입금을 허가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4】 허가기간 후 차입시행

○○학교법인의 허가기간은 2015년 5월~2016년 5월이었으나 허가 만료일 이후에 차입을 시행함

☞ 학교법인은 허가기간 내에 차입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, 허가기간 이후에 차입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【사례 5】 결과보고 미제출

○○학교법인은 교육부로부터 기채허가를 받았으나,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여도 차입·집행에 관한 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음

☞ 학교법인은 허가기간 내에 융자약정서, 회계전표, 수입지출 통장사본 등을 통해 기채 결과보고를 해야 하므로, 결과보고를 미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
붙임 **결과보고 양식**

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

학교법인 ○ ○ 학원 이사장 ㊞

처분 허가내용		실제 처분결과	
처분허가 문서번호 및 허가일자	사립대학정책과 - (. . .)	실제 처분일자 (등기이전일)	. . .
처분구분	매도( ), 증여( ), 교환( ), 용도변경( ), 담보제공( ), 의무부담( ), 권리포기( )	실제 처분한 재산의 표시	○ 토지 0필지 0,000㎡ ○ 건물 0,000㎡ ○ 지장물 0종 ○ 주식 0주 ○ 예금 0건
처분허가 재산의 표시	○ 토지 0필지 0,000㎡ ○ 건물 0,000㎡ ○ 지장물 0종 ○ 주식 0주 ○ 예금 0건	처분하지 못한 재산의 표시	○ 토지 0필지 0,000㎡ ○ 건물 0,000㎡ ○ 지장물 0종 ○ 주식 0주 ○ 예금 0건
처분허가 금액	천원	실제 처분금액	천원
		처분금의 용도별 사용내역	○ ○
처분금의 용도	○ ○	처분방법	○
처분허가 기한	. . .	향후 처분계획 (처분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 경우)	

* 처분허가 재산의 표시, 실제 처분한 재산의 표시, 처분하지 못한 재산의 표시, 처분금의 용도별 사용